

FTA 관세특례법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목 차

1. 들어가면서
2. 입법 추진배경
3. 주요 제정내용
4. FTA 관세특례법 제정의의 및 향후 과제

글 | 김석오 사무관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

1. 들어가면서

정부는 지난 12월 1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한-싱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하여 앞으로 체결되는 모든 FTA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국내 이행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한-싱 FTA가 발효된 2006. 3. 2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이 법은 대다수의 FTA에 포함되는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국내산업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원산지조사절차, 체약상대국간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국내법령 체계로 수용하는 한편, FTA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법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 동 법 제정과 함께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동시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법령의 구성체계와 관련,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주요사항과 FTA의 보편적 이행절차는 법률에 규정하고, FTA별 특이사항과 기술적인 사항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나누어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향후 체결되는 FTA는 별도의 입법 제·개정 없이 대부분 동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의 관련조항 개정만 거치면 되므로 협정의 신속한 발효와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칠 FTA는 2004. 4. 1부터 시행된 기존의 한-칠 FTA 관세특례법이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일반법 제정에 불구하고 관세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한-칠 FTA 관세특례법은 계속 존치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동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및 그 의의를 소개하여 동 제정 법령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입법 추진배경

이 법은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할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이행절차법으로서 FTA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세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통관 및 납세편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FTA는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더라도 국내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다¹⁾. 하지만 협정이 일반적인 원칙만을 규정하거나 국내법령에 협정의 이행을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사항이 국내법령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FTA의 이행을 필요한 이행절차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법령 체계를 맞추지 아니할 경우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오류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FTA 시행에 따른 혼란의 최소화화를 위해 협정과 국내법령 체계의 조화를 도모하고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는 국내법령 체계의 정비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입법방식과 관련,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칠 FTA 관세특례법²⁾과 같이 개별 FTA마다 이행특례법을 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국가 및 지역공동체 등과 FTA를 추진하고 있어 협정을 체결할 때마다 이에 따른 입법을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신속·간편한 협정발효를 위하여 기본법 방식의 입법추진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기본법 방식의 일반적 관세특례법의 제정은 매 FTA 체결시마다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내이행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FTA의 신속한 발효가 가능하다. 이외에 FTA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세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통관 및 대국민 납세편의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선진국도 FTA의 원활한 국내이행을 위하여 FTA 이행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국내법과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세법령 등에 재규정(rewriting)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³⁾ 또한, 일본의 경우 관세법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 성격의 관세장점조치법에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 등 국내법과 상충되는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노르웨이 경우에도 협정과 상충되거나 협정에서 도입된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관세법령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선진국들도 자국의 사정에 적합한 입법방식에 따라 FTA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겠다.

3. 주요 제정내용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은 본문 25개 조문과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싱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FTA 협정세를 마련

일반적으로 협정에서는 계약상대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연차적으로 세

1) 협정 제6조제1항: 협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2004. 3. 5 법률 제7172호)

3) 미국의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행을 위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1993)을 제정, 특별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상충되는 내용은 국내 관세법령(CFR 등)에 재규정

4) 일본 관세장점조치법 제7조의 8 참조

율을 인하하도록 규정(표1) 및 표2) 함에 따라 그 이행 위하여 특례법에서는 각 품목별로 실제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법 제4조). 협정에서는 각 품목별 양허 유형과 연도별 감축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국민과 집행 기관 입장에서는 실제 적용되는 구체적인 관세율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뒤따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례법의 위임근거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연도별 적용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별도로 정하였다.

(표1) 한·싱 FTA 양허유형별 관세양허 개요

양허 유형	전 세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즉시철폐	6,724 (59.7)	6,304 (68.8)	232 (16.0)	56 (13.8)	132 (53.7)
5년철폐	2,009 (17.8)	1,487 (16.2)	358 (24.7)	135 (33.3)	29 (11.8)
10년철폐	1,582 (14.1)	1,125 (12.3)	377 (26.0)	37 (9.1)	43 (17.5)
소계	10,315 (91.6)	8,916 (97.4)	967 (68.8)	228 (56.2)	204 (82.9)
양허제외	946 (8.4)	242 (2.6)	484 (33.4)	178 (43.8)	42 (17.1)
합계	11,261	9,158	1,451	406	246

(표2) 한·싱 FTA 관세양허물품의 관세감축율(백분율)

	Y0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즉 시 100											
5년철폐	16.7	33.3	50.0	66.7	83.3	100					
10년철폐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

(표3) 한·싱 FTA 양허유형별 주요품목

양허유형	주요 품목
즉시철폐	철유, 천연가스, 반도체, 컴퓨터, 유선통신기기, 섬유장품, 원광석, 종이·제지, 열감, 비금속제품, 철도차량 항공기등
5년철폐	철연조 등 산동물, 음파에어스, 한위제, 커피머, 냉장고, VCR, 조영기기등
10년철폐	맥주, 포도주, 건조수산물, 견직물, 모직물, 부직포, 영상기록매체, 배전반, 계측기등
양허제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미늘, 꿀, 참깨, 정장, 담배, 등, 농어, 미꾸라지, 휘발유, 등유 등 석유제품, 백연, 톨루엔등

FTA 협정에 따라 품목별로 적용되는 세율표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접근가능성과 관세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일반적으로 협정세율은 관세법상의 MFN 실행세율(일반세율) 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협정세율이 오히려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 원칙에 불구하고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율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협정세율이 장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인하되는 경우 협정세율 보다 관세법상의 적용세율(예: 할당세율)이 오히려 낮을 수가 있다. 이러한 때에는 특례법에 불구하고 관세법을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관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반덤핑방지관세(관세법 제51조)·상계관세(관세법 제57조)·보복관세(관세법 제63조)·긴급관세(관세법 제65조)·특별긴급관세(관세법 제68조)는 협정세율 보다 항상 우선하여 적용된다(법 제5조). 특례법의 협정세율과 관세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일반세율과의 적용우선순위를 정리하면 표4와 같다.

(표4) 협정세율과 관세법상의 관세율과의 적용순위

(1순위)	덤핑방지(51조), 상계(57조), 보복(63조), 긴급(65조), 특별긴급(68조)	관세율의 낮음에 관계없이 최우선 적용
(2순위)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협정세율 적용 관세법상 세율 적용

다. 국내산업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의 도입

대부분의 협정에서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자국산업의 피해를 구제하

기 위하여 양자간 세이프가드제도를 규정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하여 국내법상 긴급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와 기본적인 적용요건을 규정하였다.

특례법에 계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조치를 중단하거나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상물품·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하였다.(법 제6조).

동법시행령에서는 국내산업의 피해조사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조사에관한법률(이하 “산피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역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재경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피해유무를 조사하여 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하는 경우 계약상대국과의 무역보상협의를 거쳐 긴급관세조치를 취하게 된다. 싱가포르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기간은 한-싱 FTA의 경우 원칙적으로 2년간 적용되며, 필요할 경우 2년간 연장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산업피해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무역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재경부장관은 200일간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잠정조치기간 등은 개별 FTA별로 달리 정해 질 수 있어 시행령으로 규정하였다.⁵⁾

긴급관세조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협정체결이후 계약상대국 물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국내산업의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라. 특혜대상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결정원칙

특례법에서는 특혜관세 적용과 우회수입여부 판정을

위하여 원산지결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기준은 FTA 체제하에서 특혜관세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세요건 중 핵심사항의 하나이며, 우회수출입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특례법에서는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주요공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 직접 운송되어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직접운송원칙을 법제화 하였다. 그 밖에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였다(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에서는 원산지를 인정하는 완전생산물품을 10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HS 6단위 기준으로 5,224개 품목에 대하여 각 품목별로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동 규칙 별표의 제3호에 규정하였다(표5 참조).

동 별표에서는 각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과의 조합기준 등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품목마다 원산지기준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FTA 협상과정에서 국내산업의 민감성, 수출촉진의 필요성, 양국간의 교역관계 또는 품목분류 구조의 특성 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등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4,626개 품목(HS 6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거쳐 싱가포르로 수출되지만 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특례규정이 도입되었다. 동 규정은 개성공단 생산품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하여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 계약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최초의 법적 근거를

5) EFTA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기간은 한-EFTA FTA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1년간 적용되며, 필요할 경우 2년간 연장될 수 있다.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2월 15일 서명된 한-EFTA FTA에서도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고, 한-아세안 FTA에서도 원칙적으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특혜관세를 인정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표5) 한-싱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예시)

품목번호	품명	원산지인정조건
1212.20.1010	김	2단위세반변경
1904.90.1000	쌀	4단위세반변경+부가가치 45%
2005.90.1000	김치	4단위세반변경+부가가치 45%
2103.90.1010	완장	4단위세반변경+부가가치 45%
2106.90.3011	민삼차	4단위세반변경+부가가치 45%
2208.90.4000	소주	4단위세반변경
6203.42.1000	청바지	2단위+원단·원사·질단·봉제
6401.10.0000	신발	4단위세반변경
8418.10.1010	냉동고	6단위세반변경+부가가치 50%
8525.20.7039	휴대폰	4단위세반변경+부가가치 50%
8529.90.9640	TV	4단위세반변경
8703.22.1000	승용차	4단위세반변경+부가가치 55%
9004.90.1090	안경	4단위세반변경+부가가치 50%
9006.51.9000	카메라	6단위세반변경+부가가치 50%

아울러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기계·전기전자 물품 등 130개의 역외가공품(HS 10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역외산 재료의 비율이 제품가격의 40%이하이면 역내산 재료비율이 제품가격의 45% 이상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특례규정이 도입되었다. 또한, 원산지를 결정하는 보완적인 기준으로 원산지누적기준⁶⁾, 원산지인정 최소기준⁷⁾,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⁸⁾ 및 부족

품 등의 원산지결정기준 등이 마련되었다. 이외에 우회 수출입 방지를 위하여 포장·냉동·건조·도축·분쇄(grinding) 등 단순 경미한 가공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불인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마. 특혜세를 적용신청절차

특례법에서는 수입자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당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수입자가 세관장이 원산지의 심사를 위하여 증빙서류를 요구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혜관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증명하여 발급한 것과 수출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당국에서 원산지를 확인하고 발급한 것 모두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영 제2조제1항).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에 따르면 싱가포르산 물품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의하여 싱가포르 관세당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의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6) 비원산지재료(수입재료)의 가격이 제품가격의 10% 이하로서 극히 미미할 경우에는 세반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7)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재료 또는 물품의 경우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 재고관리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8) 외국에서 소를 수입하여 단순히 도축 작업만 거쳐 생산된 쇠고기는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미국산 밀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분쇄작업만 거쳐 생산된 밀가루도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까지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는 특혜관세 사후신청제도가 도입되었다. 다만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법 제10조제3항). 물론 수입신고시에는 일반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사후적용신청을 하는 때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세액경정청구서 및 원산지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10조). 세관장은 사후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신청내용이 타당할 경우 협정세율과 일반세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해 주어야 한다. 이 때 관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지급되지 아니한다(법 제10조제7항).

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존 및 서류제출 의무

협정관세를 적용 받은 수입자뿐만 아니라 계약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신청한 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도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12조제1항). 원산지의 증명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존하지 아니할 경우 동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동법 제22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수입업자는 무역거래계약

전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입증여부 및 제공가능 여부 등에 대해 수출국의 수출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수출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관세상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사. 공정무역질서 유지를 위한 원산지조사절차 마련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국내에 있는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관세당국이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에 대해 원산지의 검증요청을 받은 때에는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특별법에서는 개별 FTA 마다 원산지검증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직접검증방식과 간접검증방식⁹⁾ 등 미주권과 유럽권에서 채택하고 있는 2가지의 원산지검증 모두를 포괄적으로 도입하여 협정 이행의 신속성과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접검증 방식하에서 원산지의 확인을 위한 조사는 먼저 조사대상자로부터 원산지의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한 후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소위 '先서면조사 後현지조사원칙'을 도입하였다. 또한 국내의 수입자 또는 관련자를 조사한 후 국내

9) 직접검증방식은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적정여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을 말하며, 간접검증방식은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위탁하여 검증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칠 및 한-싱 FTA에서는 직접검증방식(미국형)을, 한-EFTA FTA에서는 간접검증방식(유럽형)을 채택하였다.

조사만으로 원산지의 확인이 곤란한 때에 한하여 계약 상대방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 조사를 하게 하는, 소위 '先국내조사 後 해외조사원칙'을 도입하였다(영 제15조 및 제16조). 아울러 간접검증 방식하에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계약상대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도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 한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요청하는 때와 그 결과를 회신 받은 때에는 수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조사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였다(영 제14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지조사를 개시하는 때와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대상자, 수입자 및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하도록 하여 조사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하였다(법 제13조제3항 내지 제7항). 한편,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 또는 수입자는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법 제13조제8항).

서면조사 단계에서 원산지의 확인을 위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명서(질문조사서)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원산지조사제도도 제3국산의 우회수입의 방지와 원산지 조작을 통한 관세탈루 행위의 차단과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특례법에서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원산지의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세관장의 자의적인 조사권 남용과 이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 방지를 위하여 조사과정에서 "비례원칙"을 도입하였고, 조사동의제도, 조사기간 연장신청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등을 병행 규정함으로써 조사절차의 투명성과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확보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였다.

아. 협정관세의 적용보류제도 및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1) 협정관세 적용보류제도

특례법에서는 원산지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 수입신고 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일시 보류할 수 있는 협정관세의 적용보류제도가 도입되었다(법 제17조). 이를 위하여 세관장은 조사개시 통보와 함께 수입자에게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통지를 하게 되며, 이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일단 관세법상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산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의 원산지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 세액을 정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2) 과세자료의 비밀유지의무

세관에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비밀유지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영업상·제조상의 비밀을 엄격히 보호하도록 하였다(법 제20조). 원산지조사를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제조원가·제조방법 및 원재료 사용내역 등 제조업체의 지적재산에 속하는 중요한 기업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엄격한 취급과 보호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법 제22조제1항).

자. 원산지사점심사 신청제도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수입 전에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원산지사전심사신청제도를 도입하였다(법 제14조). 심사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품목당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여 불요불급한 신청을 억제하고, 한정된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규칙 제27조제5항). 심사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사항에 대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교부일부터 3년이 적용된다.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원칙적으로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여 사전심사 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보장 하였다(법 제14조제3항).

관세청장이 사전심사서를 교부한 이후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예: 원재료의 가격, 제조방법 등)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사전심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법 제15조제1항). 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자가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되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영 제20조제2항). 특히, 원재료의 가격 등락에 따라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는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물품의 경우 사전심사 변경제도의 주요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변경내용은 원칙적으로 그 변경일자 이후에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나, 사전심사서의 변경내용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법 제14조제4항).

차. 협정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조치

1)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및 벌칙

원산지가 입증되지 아니하거나 수출입자 또는 계약상대국의 비협조로 인하여 원산지의 검증이 곤란한 때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협정 이행의 실효성과 강제성을 확보하였다.

먼저,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법 제16조제1항). 이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배제로 인하여 과거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때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법 제16조제2항).

- ① 상당한 사유없이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②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원산지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¹⁰⁾
- ③ 원산지조사결과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 ④ 세관장이 현지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⑥ 조사대상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아울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22조제2항), 동 벌칙에 대하여는 법인과 행위자를 모두 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법 제23조).

- ①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0) 한-EFTA FTA에서는 원산지의 검증결과와 회신기간은 조사요청을 한 날부터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관장이 요구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이외에 국내의 원산지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4조제1항)

2)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 지정제도

특례법상의 처벌대상자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은 제외된다. 체약상대국이 수출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사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체약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조치된다. 하지만, 수출국의 수출자들의 원산지 조작행위는 결국 수입국의 세수손실과 범질서 문란을 야기하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간접적인 방법이나마 제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특례법에서는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들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를 불성실하게 증명함으로써 확인된 때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수출자들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물품 전체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6조제3항).

다.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협력 및 관세상호협정의제도

1) 상호협력

협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양국 관세당국간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

여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통관절차의 간소화, 정보교환, 세관기술지원 및 세관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법 제18조제1항). 특히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조사를 요청하거나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합동으로 원산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8조제2항). 아울러, 체약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당국도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양국 관세당국간의 원활한 상호협력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는 관세협정의전담관¹¹⁾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관세상호협정의제도

우리 수출기업이 체약상대국에서 부당한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정부가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상대국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관세예로를 해소할 수 있는 관세상호협정의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법 제19조).

구체적으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을 우리나라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재경부장관에게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관세회피 목적이 있거나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장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세상호협의를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체약상대국의 관

11) 시행규칙에서는 관세협전의전담관을 재경부 소속기관과 관세청 소속기관으로 복수 지정하고 있다.

세당국이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협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관세협의기구에 동 건을 상정하여 협의할 수 있다. 협의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영 제28조).

4. FTA 관세특례법 제정의 의 및 향후 과제

가. 특례법 제정의 의의

특례법은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보편적인 사항을 국내법령 체계로 수용하는 한편 협정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담은 제정법으로서 향후 체결되는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국내 시행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동법의 제정을 통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내이행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FTA의 신속한 발효가 가능하며, 국가 신뢰도의 향상과 시장개방을 촉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FTA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세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통관 및 납세편의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례법에서는 FTA별 특이사항은 협정의 범위 안에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유연한 방식을 채택함과 동시에 “협정우선적용원칙”을 명시하여 FTA 협상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능도 수반하고 있다. 이와 같이 FTA 이행에 필요한 기본법이 마련됨으로써 관세분야에서 선진통상국가 체제로의 나아가는 데 필요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나. 향후 과제

특례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조사절차,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제도 등 현행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관세행정상의 업무수행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에 대한 원산지조사제도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법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국가간 통상마찰의 핵심적인 원인을 야기할 수 있어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부응하는 글로벌 수준의 행정능력을 배양하고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례법과 관세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입증책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례법에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수입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수출국의 수출자(생산자 포함) 또는 수출국의 관세당국에게 이차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수입자는 외국의 수출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제공여부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국의 수출자가 수입국의 세관당국에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원산지증빙서류를 제때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한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및 관세추징의 책임은 수입자에게 전적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FTA 체제하에서는 세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미국·캐나다·칠레·호주 등 FTA 다수체결국의 FTA 관세 운영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세관의 조직과 기능을 재구성하는 등 FTA 관세환경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